

日本の 工業所有權制度



白 南 洪
 〈商工部 特許局審査官〉

1. 現 況

工業所有權에 관한 業務는 日本通産省에 所屬 되어 있는 特許廳에서 管掌하고 있다.

特許廳은 廳長官 아래 總務部, 審査 1~5部, 審判部, 萬國 工業所有權 資料館, 工業所有權 研修所로 構成되고 抗告審判部는 東京高等裁判所 (高等法院) 그리고 最高裁判所(大法院)로 운영 되고 있다. 연간 出願件數는 약 50만件(特許 14만 9천件 實用新案 15만 7천件, 意匠 4만 5천件 商標 10만 7천件)으로 평균 要處理期間은 特許, 實用新案은 약 3年, 商標는 약 3年 7개월, 意匠은 약 2년 2개월이 所要되고 있다. 1974년말 出願未處理件數는 審査 115만件, 審判 5만件에 달 하고 특허청의 年間所要豫算은 100億에이다.

權利別·內外國人別 出現狀況

〈別表 1〉 (1974年)

權利 別	內 國 人	外 國 人	備 考
特 許	出 願	81.4%	內國人登錄件數 30,873件 外國人登錄件數 8,753件
	登 錄	77.9%	
新用實案	出 願	98.8%	內國人登錄件數 40,000件 外國人登錄件數 709件
	登 錄	98.3%	
意 匠	出 願	98.0%	內國人登錄件數 22,379件 外國人登錄件數 376件
	登 錄	98.3%	
商 標	出 願	91.9%	內國人登錄件數 86,646件 外國人登錄件數 3,856件
	登 錄	95.7%	

出願 및 審査·審判處理狀況

〈別表 2〉 (單位：件)

年 度	出 願	審査處理	審査官 (名)	審判處理	審判官 (名)
32~36年 (平均)	89,478	84,507		1,953	
56	148,270	124,556	350	1,768	31
57	151,770	132,015	426	2,597	49
58	179,498	137,910	429	2,706	58
59	175,872	142,942	445	2,706	58
60	164,673	166,887	497	3,061	70
61	176,765	146,976	497	3,978	79
62	230,546	174,919	497	4,607	88
63	266,447	169,387	524	4,263	94
64	276,286	191,452	594	4,341	100
65	299,186	223,204	661	4,896	106
66	320,883	222,237	742	4,895	115
67	317,905	224,145	813	5,102	124
68	355,274	243,986	878	5,636	130
69	399,759	257,001	913	5,964	136
70	443,105	293,444	898	7,225	136
71	464,724	317,973	913	8,454	145
72	531,548	340,437	969	9,344	157
73	522,078	336,357	1,024	9,538	166
74	525,893	379,037	1,063	10,050	175

(註) 審査官定員에는 分類審査官을 包含

또한 1974年度 內外國人別·權利別 出願 및 登錄의 比率은 別表 1과 같다.

2. 特許制度

日本の 工業所有權制度는 韓國과 같이 特許, 實用新案, 意匠, 商標의 4法에 따라 運用되고

있다.

이들 4法은 우리나라 工業所有權 4法과 같은 점이 많으므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을 重點적으로 記述하고자 한다.

特許, 實用新案에서는 先願 早期公開 審査請求, 審査前置, 審査公告制度를 採擇하고 있다.

모든 特許出願(實用新案包含)은 出願日에서 起算하여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公開公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出願이 公開된다. 特許의 公開公報는 出願人의 事項 및 圖面, 明細書全文, 請求範圍를, 實用新案 公開公報는 出願人의 事項 및 圖面, 請求範圍를 掲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최근 特許出願件數가 증가하여 審査가 3~4년씩이나 所要되고 연구의 重複, 2重投資를 초래하고 있어 이것을 피하고자 出願內容을 早期(1년 6개월)에 公開하여 일반에게 알리며 또 審査請求를 받아 審査請求分만 심사함으로써 審査官의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出願公開 후 特許査定까지는 1~2년이 所要되며 그동안에 出願公開된 내용이 他人으로 하여금 실시할 염려가 있으므로 出願 公開 후 特許出願人이 아닌 者가 出願公告 전에 業으로 特許出願에 관한 發明을 實施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査官은 他出願에 優先하여 審査할 수 있고 또 本特許를 實施할 사람에 대하여는 出願公告 決定 후 補償金を 請求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審査請求는 出願日로부터 特許는 7年, 實用新案은 4年 이내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出願人은 이 期間 안에 審査請求時機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必要에 따라서는 出願人이 發明實施의 시기에 따라 請求할 수 있으므로 特許期間의 效率化와 出願補正書 提出期間을 延長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다만 第3者의 審査請求가 있을 때는 上記利點은 없어지는 것이다. 出願人 자신이 그 特許權利가 必要하지 아니할 때는 審査請求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出願된 特許는 자동적으로 1年 6個月이면 出願內容이 公開公報에 의하여 公知되게 되어 있으므로 他人에게 自己出願의 特許權을 取得당하는 일이 없어 안심할 수가 있다.

한번 請求된 審査請求는 取下할 수는 없다.

上記 期間內에 審査請求가 없을 때는 特許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된다. 審査請求에 의하여 審査가 끝난 出願은 出願公告되며 出願公告 2個月內에 異議申請이 없으면 登錄査定을 한다.

審査에 不服이 있으면 審判을 請求하고 이에 不服이 있으면 東京高等裁判所에, 여기에서 不服이 있으면 다시 最高裁判所에 上告할 수가 있다. 特許의 存續期間은 出願公告日로부터 15년이며 實用新案은 公告日로부터 10년이다.

特許出願은 우리나라와 같이 1發明 1出願으로 되어 있지만 다음 條件이 만족하면 2個 이상의 發明도 同一願書에 出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2個 이상의 發明에 있어서 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된 1發明(特定發明)에 대하여 다음의 記述하는 關係를 가진 發明에 대하여는 特定發明과 동일한 願書로 出願할 수 있는 것이다.

(1) 그 特定發明의 構成에 없어서는 안될 事項의 전부 또는 그 主要部를 그의 構成에 없어서는 안될 事項의 主要部로 하고 있는 發明으로 그 特定發明의 同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2) 그 特定發明이 物의 發明인 경우 그 物을 生産하는 方法의 發明 또는 그 物을 使用하는 發明과 그 物을 生産하는 機械, 器具, 裝置, 其他의 物의 發明 또는 그 物의 特定性質만을 이용하는 物의 發明.

(3) 그 特定發明이 方法의 發明인 경우 그 方法의 發明의 실시에 직접 使用하는 機械, 器具, 裝置, 그밖의 物의 發明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併合出願이 可能하다. 또 上記 條件이 만족하면 追加特許도 받을 수 있다.

追加特許라는 것은 原特許發明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原特許權의 이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동하고 또 原特許權의 存續期間의 만료에 따라 동시에 消滅하는 것이다. 따라서 追加特許權者는 原特許權者와 동일하고 追加特許權에는 그 자신의 存續期間이 없고 단지 原特許權의 存續期間 내에서만 존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追加特許權의 原特許權이 存續期間 滿了 이외의 事由(無效, 拋棄, 特許料 不納에 의한 消滅)에 의하여 消滅되었을 때는 그 追加特許權은 原特許權이 消滅하였을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獨

立한 特許權으로 된다. 原特許에 無效의 원인이 있어 特許無效가 되어도 追加特許權에 無效의 原因이 없으면 追加特許權의 無效가 되지는 않는다. 즉 最初의 原特許權이 무효가 되어 그 權利가 消滅했을 때는 追加特許權이 독립한 特許權이 된다.

또한 上記 2項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不可能한 物質特許도 可能한 것이다.

特許權請求範圍의 記載方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單項制인데 반하여 特許法 第36條 5項의 特許請求範圍는 發明의 상세한 說明에 記載한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될 事項만 記載하여야 한다. 다만 그 發明의 實施態樣을 併記하여도 무방하다로 되어 있어 그 發明의 實施態樣에 따라 多項制가 가능한 것이다.

先願主義로 採擇하고 있는 特許制度에 있어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은 完成한 者는 하루라도 빨리 特許를 出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완전한 圖面, 明細書를 작성하여 特許廳에 提出한다는 것은 研究의 課程上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가 허다하다. 研究課程上 불가피하게 變更한 事項이 생긴 후에 提出된

補正書가 當初出願書와의 要旨變更이 있을 때 拒絶을 방지하기 위하여 補正可能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즉 出願公告決定 送達前에 한 補正書의 補正이 要旨가 변경되어 있을 때 또는 特許權의 登錄後 要旨變更으로 認定되었을 때는 그 特許出願은 補正書의 제출한 날을 特許出願한 날로 認定하여 特許를 許與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일정한 補正의 시기와 規約下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3. 商標制度

우리나라와 대체로 동일하나 權利의 비교적 자유로운 移轉을 認定하며 防護標章制度를 두고 있는 점이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 商標의 移轉은 營業과 같이 이동하는 것이 原則이지만 日本은 商標權도 無形財産임으로 他人의 讓渡 또는 分割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관념으로 自由讓渡制度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制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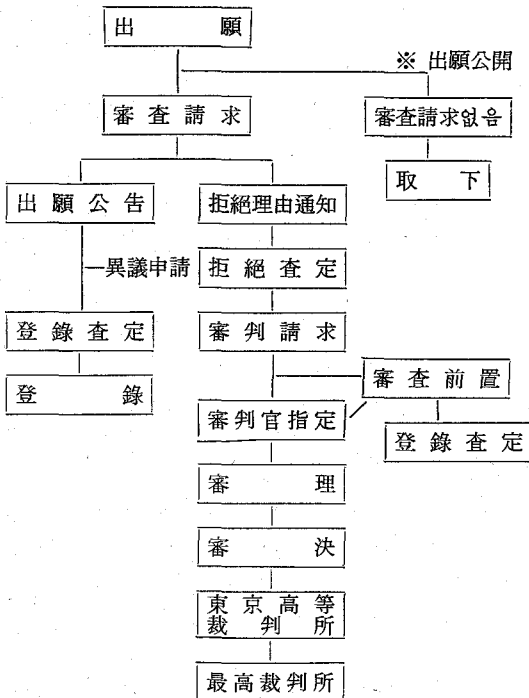
- (1) 指定商品이 2개 이상있고 이것이 非類似商品일 때만 分割하여 移轉할 수가 있다.
- (2) 聯合商標는 분리하여 移轉할 수 없다.
- (3) 商標權의 移轉은 日刊新聞에 필요한 事項은 公告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야만 등록할 수 있다.
- (4) 非營利 公益事業者의 商標는 그 事業과 같이 移轉하여야 한다.
- (5) 公共團體의 商標는 讓渡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自己의 登錄商標가 著名商標일 경우 自他商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非類似商品까지 해당商標權의 消極的 效力을 가지게 하는 것을 防護標章制度라고 한다.

이것은 商標權者가 大企業이고 多方面 經營인 경우 同一商標를 他人이 非類似商品이라 하여 登錄이 許諾되면 일반 需要者는 그 商品이 著名商標權者의 商品과 出所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著名商標에 대한 防護標章制度를 두는 것이다.

防護標章의 登錄要件으로서 是 〃보통의 商標의 登錄 때에 적용되는 登錄要件, 不登錄事由, 先

日本出願審判系統



願 등의 制約은 없으며 다음 要件만을 구비하면 된다.

(1) 防護標章의 登錄을 할 수 있는 者는 商標 權者에 限한다.

(2) 그 商標가 그 指定商品에 대하여 著名하여야 한다.

(3) 他人이 그 登錄商標와 同一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非類似商品에 使用했을 때 商品의 出所의 혼동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原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防護標章 登錄出願의 指定商品이 非類似商品이지만 生産, 판매, 취급, 原資材用途의 견지에서 同一企業에서 나오는 것으로 일반에게 認識되든가 또는 이것들을 商品이 同一産業部分에 속해 있어 크게 관련되어 있어 일반에게 認識되는 것이 必要하다.

(5) 登錄商標와 同一의 標章이어야 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使用義務는 없고 商標權의 移轉 消滅하면 그 權利도 消滅하고 移轉할 경우는 따라 移轉된다.

商標權을 指定商品에 의하여 分割移轉할 때는 防護標章登錄의 權利는 消滅된다.

4. 審判制度

審判制度는 우리나라와 大同小異하나 우리나라

의 權利範圍審判 대신 判定과 審査前置制 등이 있다.

이 判定制度는 紛爭對象과 特許權의 權利에 미치는 範圍의 판단을 特許廳에 구하는 制度이며 行政官廳에 의한 일종의 鑑定으로서 그 판단은 法律的 拘束力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不服이 있어도 再審을 認定치 않으며 訴訟으로도 審決을 取消할 수도 없다. 그러나 專門技術官廳의 鑑定이므로 事實上 사회적으로 충분히 尊重되며 裁判所로서도 有力한 判斷資料로 이용되고 있다.

拒絕査定 不服審判에 있어서 審判請求日로부터 30日 이내에 明細書와 圖面의 補正이 있을 경우 審判에 先行하여 原審査官에 再審査시키는 것을 審査前置制度라고 하여 補正된 出願의 再審査結果 拒絕査定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合議體의 審判官의 처리에 依存토록 되어 있다. 이 制度는 拒絕査定한 原審査官이 당초 審査한 경험으로 發明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상 신속하게 査定의 取消與否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審査官의 경험을 활용하여 審判官의 부담을 덜어주고 事件을 신속히 處理하는 利點이 있다.

특히 注目할 事項은 重要地方裁判所와 高等裁判所에는 特許廳 審判長이 附設되어 있어 調査官으로서 기술적인 문제 및 特許事項의 調査諮問에 응하고 있다.

國內 短信

業務處理配當制 新設

—特許局, 技術情報 科學化 爲—

特許局은 特許業務行政을 강화하기 爲해 業務處理配當制를 新設, 運用하는 한편 審査·審判業務의 補完을 爲해 금년도에 各種 技術情報를 科學化하기로 하였다.

同 業務處理配當制의 新設은 急増하는 업무량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으로 特許局長이 每月 個人別로 일정한 業務量을 配定 業務處理를 責任化하는 것이다.

特許局은 이밖에 審査準則 기준

을 補完하는 한편, 審査·審判官의 資質向上 및 專門化를 爲해 審査·審判官의 資格制를 실시하고 研修教育을 대폭 強化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技術情報資料 確保와 檢索 시스템 확립을 爲해 각종 資料를 마이크로필름化하고 2,564卷에 달하는 日本 特許公報抄錄을 入手 備置할 예정이다.

特許 관계 各種 手數料

100% 引上

特許局은 歲收増大 및 無理한 出願의 間接的인 방지로 特許業務行政을 效率化하기 爲해 出願料를 비롯한 制 限 手 數 料 를 100% 引 上 할 방

침이다.

이런 特許料 인상계획에 따르면 평균 引上幅은 100%인데 이 같은 手數料 引上으로 2~3億원의 歲收 増大가 豫想되고 있다.

辨理士 監督規制強化

特許局은 辨理士들에 대한 감독 規 則 을 大 幅 度 로 强 化 하여 辨 理 士 들 의 不 正, 不 法 行 爲 을 徹 底 히 단 속 할 方 針 이 다.

특히 未開業 辨理士들의 名義貸與行爲를 엄중히 다스릴 방침으로 지난해에는 釜山 所在 辨理士 事務所 2個所를 閉鎖시키는 등 措處를 취하였다.